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3호
----------	------------

제출년월일 : 2006. 6. 22.
제출자 : 김영진 위원

1. 수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명료화를 처분전 사전통지 규정.
- 처분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준용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안 “제2조(과태료 부과 등)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제2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로 수정
- 안 “제3조(청문)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제3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

○ “제4조(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과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를 신설

○ 안 “제4조(불복)” 을 “제5조(불복)” 로 수정

○ 안 “제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수정

○ 안 “제6조(강제징수)” 을 “제7조(강제징수)” 로 수정

○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건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를 신설

○ 안 “제7조(시행규칙)” 을 “제9조(시행규칙)” 로 수정

별첨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 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 등)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제2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 “제3조(청문)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제3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 “제4조(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과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4조(불복)”을 “제5조(불복)”로 한다.

○ “제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 “제6조(강제징수)”을 “제7조(강제징수)”로 한다.

○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건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신설한다.

○ “제7조(시행규칙)”을 “제9조(시행규칙)”로 한다.

별첨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청문)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 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당사자들은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제4조(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과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불복) 제5조(과태료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복) 제6조(과태료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강제징수) (신설)	제7조(강제징수)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신설)	제9조(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첨)
(신설)	별지 제2호 서식(별첨)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는 곳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소재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의견제출	기관명		부서명	
	주소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2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과태료 :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인)